

##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23.4.1 시행)

- (심사총량제) 심사위원별 설계공모 심사참여 횟수를 심사일 기준 월 2회 이하 및 연 12회 이하로 제한하여 부실심사\* 방지

\* 특정 심사위원의 편중 및 과도한 심사참여(월 5건 이상) 등으로 공모지침 및 설계도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이해가 부족한 채로 심사가 이뤄지는 사례 有

-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회의 심사가 이뤄지므로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심사횟수를 산정하도록 규정

- 해당 발주기관은 각 심사위원별로 다른 발주기관의 설계공모를 포함한 전체 심사 참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규정

\* 설계공모 포탈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심사횟수에 확인 필요

- (경과규정) 고시 시행 전(~3.31) 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둠

## □ 심사총량제 관련 운영 세부사항

- (산정 방식) 심사위원 위촉 사실을 기준으로 심사횟수를 산정

\* 예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심사횟수 산정에서 제외

\*\* 연 12회 기준 적용 시에도 실제 참여여부와 무관히 위촉사실 기준으로 산정

예) A기관에서 7월에 예정된 설계공모 심사의 심사위원으로 B위원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B위원의 설계공모 위촉 현황(타기관 포함)을 확인하여 7월에 이미 2회의 심사가 예정되었다면 해당 위원 위촉 불가

- (확인사항) 발주기관 일괄 확인 및 심사위원 개별 확인 필요

- (위촉 시) 발주기관이 세움터, 조달청 등 설계공모 사이트를 통해 심사위원 후보의 참여횟수를 확인하고 심사위원별 서면 확인서 제출받아 관리

- (심사 당일) 위촉 시 제출받은 서면 확인서에 심사위원 본인 확인

※ 서면확인서에 포함할 사항

- 해당 연도 월별 심사위원 위촉 횟수 기재  
(타발주기관의 설계공모 모두 포함, 예비심사위원 별도 표기)
- 발주기관의 요청 시 세부 증빙자료 제출에 동의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함에 동의
- **심사 당일**, 해당 확인서 내용에 틀림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서명  
(변동이 있다면 변경사항에 대해 기재 및 서명)
- 작성 및 확인 내용 상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에 배제될 수 있음에 동의

○ (경과규정) 올해의 경우는 3월까지 공고에 의한 심사는 연간 12회에 산입하지 않고, 4월 이후 공고를 기준으로 심사횟수 12회 산정

\* 개정 지침 적용 전(~23.3월) 공고된 설계공모 일정에 따른 설계공모는 모두 배제

예1) 3월 공고에 의해 B심사위원의 6월의 심사일정이 3회인 경우, 심사총량제 적용하지 않음

예2) 3월 공고에 의해 B심사위원의 7월의 심사일정이 2회 이미 있고, 지침 개정 이후인 4월 공고에 의해 B심사위원의 7월 심사일정이 추가로 1회 생기는 경우 : 심사총량제 7월 1회 산정 및 연간 12회 기준 적용(1회)

☞ 심사총량제는 심사위원의 심사참여 횟수 상한을 통해 전문성 있는 설계공모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며, 위반 시 제재나 귀책여부에 따른 패널티가 별도로 없음

다만, 추후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참여업체들의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 및 관리 필요